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와 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하여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필리핀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안 제2조 제23항 및 별표 17의8 신설)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규정함.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안 제13조 제1항제16호 신설)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조사 요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안 제21조제24항, 제23조제1항제19호, 제23조제2항제21호, 제23조제3항제21호, 제24조제1항제16호, 제30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4항 및 별표 24의3 신설, 안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제29조제1항)

- 1)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 2)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연장기간 포함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3)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점진적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4)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후 45일이 경과한 후에만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하도록 함.
- 5) 필리핀산 바나나에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안 제33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33조제1항·제6항·제7항·제11항)

-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필리핀에 통보하도록 함.
-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필리핀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함.

마.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안 제34조제2항·제7항·제8항)

-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개시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11.21.~12.1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㉓ 법 제 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8과 같다.

제13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제21조에 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 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합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3조제2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제23조제3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 중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으로 한다.

제27조 중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필리핀과의 협정: 별표 24의3

제32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중

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필리핀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 “영국,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캄보디아 또는 중국”을 “캄보디아,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 “대사관 및”을 “대사관,”으로, “대사관에”를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로부터”를 “공화국들,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로, “콜롬비아 및 중미 공화국들”을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으로, “공화국들 또는 캄보디아의”를 “공화국들,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를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로, “제3.11조 또는”을 “제3.11조,”로, “제5.9조”를 “제5.9조 또는 필리핀과의 협정 제3.10조”로,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를”을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필리핀을”로 한다.

4.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전

제34조제2항 본문 중 “인도네시아 또는 이스라엘”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또는 필리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캄보디아 또는 중국”을 “캄보디아,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 “및”을 “,”로, “대사관에”를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콜롬비아:”를 “콜롬비아 및 필리핀:”으로 한다.

별표 17의8, 별표 2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협정관세율)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2조(협정관세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③ 법 제 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8과 같다.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 ~ 15. (생략) <u><신 설></u>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 ----- ----- ----- ----- ----- ----- ----- 1. ~ 15. (현행과 같음) 16.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 ②③ (생략)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장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아세안회원국, 인도, 미합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과 품목번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2. (생략)

②④ 기획재정부장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해야 한다.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 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 18. (생 략)
<신 설>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0. (생 략)
<신 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

-----.

1. ~ 18. (현행과 같음)
19.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
입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

-----.

1. ~ 20. (현행과 같음)
2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
입물품: 2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0.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 ~ 1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

-----.

1. ~ 20. (현행과 같음)
2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
입물품: 3년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

-----.

1. ~ 15. (현행과 같음)
16.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
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 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 방법의 협의) ① (생략)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 방법의 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 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 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 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 들, 영국,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 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 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 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② ----- ----- ----- ----- -----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 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 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터키, 콜롬비 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 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 화 대상국가) ----- ----- ----- ----- ----- ----- ----- 인도네시

아 및 이스라엘을 말한다.	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 -----.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상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 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 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 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 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 를 할 수 없다.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상 특례) ① ----- ----- ----- 인도네 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법 제24 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 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 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 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 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 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 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 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9. 필리핀과의 협정: 별표 24의3</u>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 ⑬ (생 략)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 ⑬ (현 행과 같음)
<u><신 설></u>	<u>⑭ 기획재정부장은 필리핀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 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필리핀과의 협정 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 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그 긴 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 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u>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 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 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 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 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 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① ----- -----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캄보	3. -----

디아, 베트남, 영국 및 인도네 시아: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 영국, 인도네시 아 및 필리핀: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 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 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 의 사실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덤핑 사실 등의 조사” 라 한다)를 시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체약상대국에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 일전</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 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 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한 경우 「관 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 속의 제의(이하 “약속의 제의” 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	⑥ ----- ----- <u>캄보디아, 중국 또는 필리핀</u> --- ----- ----- ----- ----- -----

으로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
대사관, 호주, 캐나다 또는 캐나
다 대사관, 뉴질랜드, 베트남 또
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
는 캄보디아 대사관 및 중국 또
는 중국 대사관에 제공해야 한
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
들 또는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약속의 제의(미
합중국, 콜롬비아 및 중미 공화
국들의 경우에는 가격수정에 관
한 약속의 제의를 말한다)와 관
련하여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
나다, 중미 공화국들 또는 캄보
디아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⑧ ~ ⑩ (생략)

⑪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
자, 터키, 베트남, 영국 또는 인
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유럽
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

----- 대사관, -----
-----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 -----
--.

⑦ -----
----- 공화국
들,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
부터 -----
-----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
들 및 필리핀-----

----- 공화국들,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의 -----
-----.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
----- 영국, 인도네시
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

터키와의 협정 제4. 9조, 베트남
과의 협정 제7.9조, 영국과의 협
정 제3.11조 또는 인도네시아와
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덤핑방
지관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유럽연합당사자, 터
키, 베트남, 영국 또는 인도네시
아를 원산지로서 하는 같은 물품
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
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
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
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⑫ ~ ⑭ (생략)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생략)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
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
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이스라엘로부
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

-- 제3.11조, -----
----- 제5.9조 또는 필리핀과
의 협정 제3.10조-----

----- 영국, 인도네시아 또
는 필리핀을 -----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또는 필
리핀으-----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연 락 처	(044) 215 - 4471